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나2611 판결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나26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단5024113 판결

전문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명호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윤준섭

변론 종결 2019. 7. 11

판결선 고 2019. 9. 5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단502411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추가주장

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C의 이사이자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인 원 고가 회사와 자기거래를 한 것인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의 궁박한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무조건적인 연대보증책임을 지웠는바, 이는 민법 제104조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가사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의 연대보증책임 중 일부가 감경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C의 폐업과 관련하여 오로지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여 지속적으로 분쟁을 야기하고 있음을 감안할때,원고의 청구 자체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위반되는부당한 권리행사이다,

나. 판 단

1) 상법 제398조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고,다만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판결)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자 약정 없이 C에 금전을 대여한 것이어서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사회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피고의 공박 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C의 폐업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법상 신의성실의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판사 최한돈 판사 이광영